

# 숙명여자대학교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동강령

- 제정: 2026년 2월 10일
- 관리부서: 기획처, 교무처
- 관련부서: AI센터

인공지능(AI)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고히 하고,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,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숙명여자대학교 구성원의 인공지능(AI)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고자 한다.

## 제1조(목적)

이 행동강령은 숙명여자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교직원 및 학생이 인공지능(이하 "AI"라 한다)의 개발 및 활용 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대학 교직원 및 학생(이하 "구성원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## 제3조(원칙과 핵심요건)

① AI는 대학의 교육목표 실현 범위 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.

- 인권보장 (HumanRights) :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최우선 고려하며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- 독립성 (Independence) : 기술과 기계의 영향과 간섭없이 스스로 사고 및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.
- 주도성 (Initiative) : 스스로의 생각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하

는 실천적 성향을 유지한다.

② AI는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,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.

1. 공공성 (Publicness) : 대학의 교육목표와 가치 실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AI를 활용한다.
2. 다양성 (Diversity) : 획일화가 아닌 사회 다양한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한다.
3. 포용성 (Inclusion) : 대학 공동체 구성원 및 미래세대,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연대, 공감, 소통을 추구한다.

③ AI는 대학 교육의 목표 실현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.

1. 책무성 (Accountability) : 인간의 기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, 학문적 진실성을 추구한다.
2. 독창성 (Ingenuity) : 미래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.
3. 형평성 (Equity) : 다양한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AI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.
4. 안전성 (Safety) : AI 활용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지원 과정에서 노력한다.

#### **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**

① 우리 대학은 추구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이 행동강령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<별표1>과 <별표2>에 기반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및 단과대학(관계 대학원 포함)과 협의해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## **제5조(교육)**

- ① 구성원은 AI 개발 또는 활용 시 제3조에 정한 원칙 및 핵심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교수진은 교육 및 평가 시 이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에 AI 사용에 대한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은 이 행동강령 및 교수진의 지도를 따라 AI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. 시험 및 과제를 수행할 때 교수진이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A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학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및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.

## **제6조(연구)**

구성원의 연구 수행시 AI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.

## **제7조(행정)**

행정 부서는 제3조의 원칙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, AI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
## **제8조(AI윤리위원회)**

- ① 대학은 이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AI윤리위원회(이하 "윤리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 **제9조(운용세칙)**

총장은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**부칙 <2026.02.10.>**

제1조(시행일) 본 행동강령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